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가정폭력범죄를 전자장치 부착 대상 범죄에 추가〉
■ 양부남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2411호)

2026. 7.

법 제 사 법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최 기 도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3
1.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요	3
2. 가정폭력범죄를 전자장치 부착 및 보호관찰 대상에 추가	7
3.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 집행 절차 등	16
참고. 가정폭력처벌법상 가정폭력범죄	28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양부남의원 등 11인
2. 제 안 일 : 2025. 8. 27.
3. 회 부 일 : 2025. 8. 28.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는 특정범죄로 성폭력 범죄,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 살인범죄, 강도범죄 및 스토킹범죄를 규정하여 가정폭력범죄는 포함하고 있지 않음.

그런데 가정에서 일어나는 범죄는 반복적이고 상습적으로 일어나며 피해대상이 주로 사회적·경제적 약자라는 점에서 피해가 반복될 경우 폭력행위가 살인 등 강력범죄로 이어져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음. 실제로 지난 6월에는 인천 부평에서 한 남성이 아내에 대한 접근금지조치가 종료된지 1주일만에 아내를 살해한 사건이 발생하여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이 시급한 상황임.

이러한 피해의 예방을 위해서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격리가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므로 가정폭력범죄에 대해서도 전자장치 부착 제도를 두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

이에 가정폭력범죄자 중 재범 위험성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위치 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피해자와의 접촉을 사전에 차단하여 가정폭력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해자에 대해서도 전자장치 부착을 통해 피해자에 대한 접근이 심각한 범죄라는 인식을 심어주려는 것임

나.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양부남의원이 대표발의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41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III. 검토의견

1.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요

○ 개정안 의결의 전제로 양부남의원이 대표발의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가정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일부개정 법률안」(의안번호 제2212410호)은 가정폭력처벌법상의 임시조치와 피해자보호명령에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치 추적 전자장치(이하 ‘전자장치’라 한다) 부착을 추가하고,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치는 행위를 한 자를 처벌하여 가정폭력범죄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내용임.¹⁾

○ 가정폭력처벌법은 가정구성원²⁾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가정폭력으로 정의하며³⁾, 가정폭력으로

1)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12410호) 제29조(임시조치) ① 판사는 가정보호사건의 원활한 조사·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가정폭력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

1. ~ 3. (생략)

3의2.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이하 “전자장치”라 한다)의 부착

제55조의2(피해자보호명령 등) ① 판사는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자, 그 법정대리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가정폭력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자보호명령을 할 수 있다.

1. ~ 3. (생략)

3의2. 전자장치의 부착

2)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가정구성원”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

나. 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관계(사실상의 양친자관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다. 계부모와 자녀의 관계 또는 적모(嫡母)와 서자(庶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라. 동거하는 친족

「형법」상 상해, 폭행, 유기, 학대, 체포, 감금, 협박, 강간, 추행, 명예훼손, 주거침입, 강요, 공갈, 재물손괴의 죄 등을 가정폭력범죄로 규정하고 있음.⁴⁾

-
- 3)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정폭력”이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2. “가정구성원”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가.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
 - 나. 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관계(사실상의 양친자관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 다. 계부모와 자녀의 관계 또는 적모(嫡母)와 서자(庶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 라. 동거하는 친족
- 4)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가정폭력범죄”란 가정폭력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 가. 「형법」 제2편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 중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제258조(중상해, 존속중상해), 제258조의2(특수상해), 제260조(폭행, 존속폭행)제1항·제2항, 제261조(특수폭행) 및 제264조(상습범)의 죄
 - 나. 「형법」 제2편제28장 유기와 학대의 죄 중 제271조(유기, 존속유기)제1항·제2항, 제272조(영아유기), 제273조(학대, 존속학대) 및 제274조(아동학사)의 죄
 - 다. 「형법」 제2편제29장 체포와 감금의 죄 중 제276조(체포, 감금, 존속체포, 존속감금), 제277조(중체포, 중감금, 존속중체포, 존속중감금), 제278조(특수체포, 특수감금), 제279조(상습범) 및 제280조(미수범)의 죄
 - 라. 「형법」 제2편제30장 협박의 죄 중 제283조(협박, 존속협박)제1항·제2항, 제284조(특수협박), 제285조(상습범)(제283조의 죄에만 해당한다) 및 제286조(미수범)의 죄
 - 마. 「형법」 제2편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제300조(미수범), 제301조(강간등 상해·치상),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치사), 제302조(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제305조의2(상습범)(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에 한한다)의 죄
 - 바. 「형법」 제2편제33장 명예에 관한 죄 중 제307조(명예훼손), 제308조(사자의 명예훼손), 제309조(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 및 제311조(모욕)의 죄
 - 사. 「형법」 제2편제36장 주거침입의 죄
 - 아. 「형법」 제2편제37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중 제324조(강요) 및 제324조의5(미수범)(제324조의 죄에만 해당한다)의 죄
 - 자. 「형법」 제2편제39장 사기와 공갈의 죄 중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및 제352조(미수범)(제350조, 제350조의2의 죄에만 해당한다)의 죄
 - 차. 「형법」 제2편제42장 손괴의 죄 중 제366조(재물손괴등) 및 제369조(특수손괴)제1항의 죄
 - 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및 제15조(미수범)(제14조의 죄에만 해당한다)의 죄
 - 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3호의 죄
 - 파. 가목부터 타목까지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

- 가정폭력범죄 사건은 검사가 사건의 성질·동기 및 결과, 가정폭력 행위자의 성행 및 피해자의 의사 등을 고려하여 가정폭력처벌법에 따른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하거나⁵⁾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일반 형사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음.⁶⁾

<가정폭력범죄 검거·조치 현황>

(단위: 건, 명)

구분	검거건수	검거인원			가정보호사건 송치인원
		계	구속	불구속	
2019년	50,277	59,472	490	58,982	21,228
2020년	44,459	52,431	330	52,101	19,379
2021년	46,041	53,985	410	53,575	24,867
2022년	44,816	52,146	496	51,650	25,319
2023년	44,582	55,247	575	54,672	21,151

자료 : '2024 경찰백서', 경찰청, 2025, p.101

가정폭력범죄 사건의 처리 절차나 단계에 관계없이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는 경우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의해서 또는 직권으로 검사가 법원에 '피해자 또는 가정 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와

5)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9조(가정보호사건의 처리) ① 검사는 가정폭력범죄로서 사건의 성질·동기 및 결과, 가정폭력행위자의 성행 등을 고려하여 이 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는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한다.

6) 대법원 2025. 7. 16. 선고 2025도6151

같은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고, 판사는 가정보호사건의 원활한 조사·심리 등을 위해 결정으로 임시조치를 할 수 있음.⁷⁾⁸⁾

또한 피해자, 그 법정대리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판사는 가정폭력행위자의 피해자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는 등의 피해자보호 명령을 할 수 있음.⁹⁾

7) 단, 임시조치는 보호처분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검사가 사건이 더 중하다고 보아 행위자를 기소하는 경우에는 임시조치는 효력을 잃게 된다. 즉 피해자에게 더 위험하다고 볼 수 있는 중한 사건에서 피해자 보호에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김혜정, '가정폭력범죄 대응방안에 대한 재고찰', 홍익법학 제19권 제3호, 2018, p.285.)

8)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임시조치의 청구 등) ① 검사는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에 제29조제1항제1호·제2호 또는 제3호의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② 검사는 가정폭력행위자가 제1항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된 임시조치를 위반하여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에 제29조제1항제5호의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제29조(임시조치) ① 판사는 가정보호사건의 원활한 조사·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가정폭력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

1.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2.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이나 그 주거·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3.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4. 의료기관이나 그 밖의 요양소에의 위탁
5.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6. 상담소등에의 상담위탁

9)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5조의2(피해자보호명령 등) ① 판사는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자, 그 법정대리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가정폭력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자보호명령을 할 수 있다.

1.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2.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이나 그 주거·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3.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4. 친권자인 가정폭력행위자의 피해자에 대한 친권행사의 제한
5. 가정폭력행위자의 피해자에 대한 면접교섭권행사의 제한

2. 가정폭력범죄를 전자장치 부착 및 보호관찰 대상에 추가

- 개정안은 현행법 제2장 ‘형 집행 종료 후의 전자장치 부착’과 제2장의2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 대상인 특정범죄에 가정폭력범죄를 추가하는 내용임(안 제5조 등).

현 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1. “특정범죄”란 성폭력범죄,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 살인범죄, <u>강도범죄 및 스토킹범죄</u> 를 말한다.	1. ----- ----- <u>강도범죄, 스토킹범죄 및 가정폭력범죄</u> -----.
2. ~ 3의4. (생략)	2. ~ 3의4. (현행과 같음)
<u><신설></u>	3의5. “가정폭력범죄”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가정구성원 사이에 발생한 다음 각 목의 범죄를 말한다. 가. 「형법」 제2편 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 중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제258조(중상해, 존속중상해), 제258조의2(특수상해), 제260조(폭행, 존속폭행)제1항·제2항, 제261조(특수폭행) 및 제264조(상습범)의 죄 나. 「형법」 제2편 제29장 체포와 감금의 죄 중 제276조(체포, 감금, 존속체포, 존속감금), 제277조(중체포, 중감금, 존속중체포, 존속중감금), 제278조(특수체포, 특수감금), 제279조(상습범) 및 제280조(미수범)의 죄 다. 「형법」 제2편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

현행	개정안
4. (생략) 제5조(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청구) ① ~ ⑤ (생략) <u><신설></u>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부착명령의 청구는 공소가 제기된 특정범죄사건의 항소심 변론종결 시까지 하여야 한다. ⑦ (생략)	(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제300조(미수범), 제301조(강간등 상해·치상),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치사), 제302조(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제305조의2(상습범)(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에 한정한다)의 죄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 처벌되는 죄 4. (현행과 같음) 제5조(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청구)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가정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부착명령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1. 가정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그 집행을 종료한 후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 10년 이내에 다시 가정폭력범죄를 저지른 때 2. 가정폭력범죄로 이 법에 따른 전자장치를 부착하였던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가정폭력범죄를 저지른 때 3. 가정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그 습벽이 인정된 때 ⑦ -----제6항----- ----- ----- -----. ⑧ (현행 제7항과 같음)

현행	개정안
⑧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특정범죄사건에 대하여 판결의 확정 없이 공소가 제기된 때부터 1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부작명령을 청구할 수 없다. 제9조의2(준수사항) ① · ② (생략)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u>사람(19세 미만의 사람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 한정한다)</u> 또는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 제9조 제1항에 따라 부작명령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1항의 준수사항을 부과하여야 한다. 1. (생략) 2. <u>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u>: 제1항 제3호의 준수사항을 포함할 것 제21조의2(보호관찰명령의 청구)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형의 집행이 종료된 때부터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을 받도록 하는 명령(이하 “보호관찰명령”이라 한다)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1. ~ 5. (생략) <u><신설></u> 제21조의4(준수사항) ① (생략)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u>사람(19세 미만의 사람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 한정한다)</u> 또는 스	⑨ -----<u>제6항</u>----- ----- ----- -----. 제9조의2(준수사항)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u>사람(19세 미만의 사람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 한정한다)</u>,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 또는 가정폭력범죄----- ----- -----. 1. (현행과 같음) 2. <u>스토킹범죄 또는 가정폭력범죄</u>----- ----- 제21조의2(보호관찰명령의 청구) ----- ----- ----- ----- ----- -----. 1. ~ 5. (현행과 같음) 6. <u>가정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가정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u> 제21조의4(준수사항) ① (현행과 같음) ② ----- -----<u>사람(19세 미만의 사람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 한정한다)</u>, 스토킹

현행	개정안
<u>토킹범죄</u>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는 제21조의3에 따라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하는 경우 제9조의2제1항제3호를 포함하여 준수사항을 부과하여야 한다. 제21조의8(준용규정) 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해서는 제5조제6항·제8항, 제6조부터 제8조까지, 제9조제2항부터 제9항까지, 제9조의2,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제13조제5항부터 제9항까지, 제15조 및 제17조부터 제2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되, “부착명령”은 “보호관찰명령”으로, “부착기간”은 “보호관찰 기간”으로,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로, “피부착자”는 “보호관찰대상자”로, “전자장치 부착”은 “보호관찰”로 본다.	<u>범죄를 저지른 사람 또는 가정폭력범죄</u>----- ----- -----. 제21조의8(준용규정) ----- -----<u>제5조제7항·제9항</u>----- ----- ----- ----- ----- ----- ----- ----- -----.

- 현행법은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적용대상 범죄를 성폭력범죄,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 살인범죄, 강도범죄 및 스토킹범죄로 규정¹⁰⁾ 및 이를 특정범죄라고 정의하고, 특정범죄를 범한 사람 중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과거 범죄 전력에 따라 형 집행 종료 후 전자장치 부착 또는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을 명하도록 하고 있으며¹¹⁾, 부착명령 또는 보호관찰

10)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특정범죄”란 성폭력범죄,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 살인범죄, 강도범죄 및 스토킹범죄를 말한다.

11) 제5조(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청구) ①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부착명령”이라 한다)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1.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그 집행을 종료한 후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
2. 성폭력범죄로 이 법에 따른 전자장치를 부착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지

명령과 함께 준수사항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¹²⁾

른 때

3.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그 습벽이 인정된 때

4.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

5.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

② 검사는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부착명령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유괴범죄로 징역형의 실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종료 또는 면제된 후 다시 유괴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부착명령을 청구하여야 한다.

③ 검사는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부착명령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살인범죄로 징역형의 실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종료 또는 면제된 후 다시 살인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부착명령을 청구하여야 한다.

④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강도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부착명령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1. 강도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그 집행을 종료한 후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 10년 이내에 다시 강도범죄를 저지른 때

2. 강도범죄로 이 법에 따른 전자장치를 부착하였던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강도범죄를 저지른 때

3. 강도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그 습벽이 인정된 때

⑤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스토킹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부착명령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1. 스토킹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그 집행을 종료한 후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 10년 이내에 다시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때

2. 스토킹범죄로 이 법에 따른 전자장치를 부착하였던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때

3. 스토킹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그 습벽이 인정된 때

제21조의2(보호관찰명령의 청구)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종료된 때부터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을 받도록 하는 명령(이하 “보호관찰명령”이라 한다)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1.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2.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3.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4. 강도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강도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5.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스토킹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12) **제9조의2(준수사항)** ① 법원은 제9조제1항에 따라 부착명령을 선고하는 경우 부착기간의 범위에서 준수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준수사항 중 하나 이상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의 준수사항은 500시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1. 야간, 아동·청소년의 통학시간 등 특정 시간대의 외출제한

2. 어린이 보호구역 등 특정지역·장소에의 출입금지 및 접근금지

2의2. 주거지역의 제한

3. 피해자 등 특정인에의 접근금지

4. 특정범죄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

5. 마약 등 중독성 있는 물질의 사용금지

6. 그 밖에 부착명령을 선고받는 사람의 재범방지와 성행교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개정안은 가정구성원 사이에 발생한 폭행의 죄, 체포와 감금의 죄 및 강간과 추행의 죄를 가정폭력범죄로 규정하고, 가정폭력 범죄자를 전자장치 부착명령 대상에 포함하여 가정폭력 재발을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그 입법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 다만, 개정안에 대하여는 개정안의 입법취지와 함께 가정폭력 범죄가 가정구성원 사이에 발생하는 다양한 범죄행위를 포괄하는 범죄라는 점에서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대상이 되는 범죄가 지나치게 확대될 수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성폭력범죄 등 특정범죄는 모두 구체적인 행위를 그 범죄의 구성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음에 반해, 가정폭력범죄는 ‘가정구성원 사이에 발생한’ 범죄로서 가해자와 피해자 간의 관계가 범죄의 주된

② 삭제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19세 미만의 사람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 한정한다) 또는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 제9조제1항에 따라 부착명령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1항의 준수사항을 부과하여야 한다.

1. 19세 미만의 사람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 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준수사항을 포함할 것. 다만, 제1항제1호의 준수사항을 부과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준수사항을 포함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 제1항제3호의 준수사항을 포함할 것

제21조의4(준수사항) ① 법원은 제21조의3에 따라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하는 경우 제9조의2제1항 각 호의 준수사항 중 하나 이상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제9조의2제1항제4호의 준수사항은 300시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19세 미만의 사람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 한정한다) 또는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는 제21조의3에 따라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하는 경우 제9조의2제1항제3호를 포함하여 준수사항을 부과하여야 한다.

구성요건임.

따라서 가정폭력범죄를 특정범죄에 추가할 경우 전자장치 피 부착자 대상의 대폭 확대로 인해 보호관찰관의 업무 가중 및 기존 전자감독의 효과 저해 등을 초래할 수 있고, 적정 수준의 전담인력이 유지되지 않는다면 전자장치 부착제도가 효과적으로 운영되지 못할 수 있음.¹³⁾

□ 또한 개정안에 따른 가정폭력범죄에는 가정구성원 사이에 발생한 ‘상해와 폭행의 죄’, ‘체포와 감금의 죄’ 및 ‘강간과 추행의 죄’만 포함되는 반면,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3호의 가정폭력범죄에 포함되는 ‘유기와 학대의 죄’, ‘협박의 죄’ 등은 개정안에 따른 가정폭력범죄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전자장치부착법은 고위험 강력범죄인 살인범죄나 강도범죄, 흉악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스토킹범죄와 같이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피해의 정도가 심각한 범죄를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대상인 특정범죄로 규정하고 있고¹⁴⁾,

가정폭력처벌법상 가정폭력범죄에 해당하는 학대죄 및 아동 학사의 죄, 협박죄 및 특수협박죄 등은 재범의 가능성이 높고

13) 국회입법조사처, 『전자장치 부착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 제212호, 2021.10.19., pp13-14

14) 현재 2026. 1. 29. 2024헌마1102

범죄의 객체인 가정구성원을 추가적인 범죄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높은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전자장치 부착명령 적용대상 범죄에 포함하는 것이 적절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음.

구분	가정폭력처벌법	개정안
상해와 폭행의 죄	○	○
유기와 학대의 죄	○	X
체포와 감금의 죄	○	○
협박의 죄	○	X
강간과 추행의 죄	○	○
명예에 관한 죄	○	X
주거침입의 죄	○	X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	X
사기와 공갈의 죄	○	X
손괴의 죄	○	X
성폭력처벌법에 따른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행위	○	X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불법정보 유통금지 위반죄	○	X

□ 한편, 개정안의 가정폭력범죄에 포함되어 있는 「형법」상 강간과 추행의 죄는 현행법에 따른 특정범죄에 해당하여 전자장치 부착명령 대상 범죄인 점 및 대법원이 부부간에도 강간죄가 성립될 수 있다고 판시한 점에 비추어¹⁵⁾

가정구성원 사이에 발생한 강간과 추행의 죄를 저지른 사람은
현행법 하에서 전자장치 부착과 보호관찰이 가능하므로 해당
부분을 별도로 입법할 실익에 대한 논의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임.

15) ‘형법 제297조가 정한 강간죄의 객체인 부녀에는 법률상 처가 포함되고,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경우에도 남편이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여 아내를 간음하는 경우에는 강간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3. 5. 16. 선고 2012도14788)

3.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 집행 절차 등

- 개정안은 가정폭력처벌법 개정안이 임시조치 및 피해자보호명령 내용으로 전자장치 부착을 규정함에 따라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의 집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내용임(안 제5장의3).

현 행	개정안
<신 설>	제5장의3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 제31조의9(전자장치 부착의 집행) ① 법원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1항제3호의2에 따른 임시조치(이하 이 장에서 “임시조치”라 한다) 또는 같은 법제55조의2제1항제3호의2에 따른 피해자보호명령(이하 이 장에서 “피해자보호명령”이라 한다)으로 전자장치의 부착을 결정한 경우 그 결정문의 등본을 가정폭력행위자의 사건 수사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이하 이 장에서 “관할경찰관서”라 한다)의 장과 가정폭력행위자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이하 이 장에서 “보호관찰소”라 한다)의 장에게 지체 없이 송부하여야 한다. ② 임시조치 결정 또는 피해자보호명령 결정을 받은 가정폭력행위자는 법원이 지정한 일시까지 보호관찰소에 출석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상정보 등을 서면으로 신고한 후 보호관찰관의 지시에 따라 전자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 ③ 보호관찰소의 장은 가정폭력행위자가 제2항에 따라 전자장치를 부착하면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이를

현행	개정안
	즉시 통지하여야 하고, 관할경찰관서의 장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3호의2에 따른 가정폭력행위자의 임시조치 또는 같은 법 제55조의2제1항제1호·제2호 및 제3호의2에 따른 가정폭력행위자의 피해자보호명령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피해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1. 성명 2. 주민등록번호 3. 주소 및 실제 거주지 4. 직장 소재지 5. 전화번호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보호관찰소의 장은 가정폭력행위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실을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에 따라 법원이 지정한 일시까지 보호관찰소에 출석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전자장치 부착을 거부하는 경우 2. 임시조치 기간 중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위반하였거나 위반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임시조치 기간 중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13항을 위반하였거나 위반하였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4. 피해자보호명령 기간 중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5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위반하였거나 위반할 우려가 있는 경우

현행	개정안
	5. <u>피해자보호명령 기간 중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5조의2제7항을 위반하였거나 위반하였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u> 6. <u>그 밖에 임시조치 또는 피해자보호명령의 이행 및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절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u> ⑤ <u>관할경찰관서의 장은 제4항에 따른 통지가 있는 경우 즉시 가정폭력행위자가 소재한 현장에 출동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사유를 확인하고,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1항제5호에 따른 유치 신청 등 피해자 보호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u> ⑥ <u>법원은 임시조치 또는 피해자보호명령의 연장·변경·취소 결정을 하는 경우 관할경찰관서의 장과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이를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u> ⑦ <u>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전자장치 부착의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u>제31조의10(전자장치 부착의 종료) 제31조의9에 따른 가정폭력행위자의 전자장치 부착의 종료에 관하여는 제31조의7을 준용한다. 이 경우 “잠정조치”는 “임시조치” 또는 “피해자보호명령”으로 본다.</u> <u>제31조의11(가정폭력행위자 수신자료의 보존·사용·폐기 등) ① 보호관찰소의 장은 제31조의9제2항에 따라 전자장치를 부착한 가정폭력행위자의 전자장치로부터 발신되는 전자파를 수신하여 그 자료(이하 “가정폭력행위자 수신자료”라 한다)를 보존하여야 한다.</u>

현행	개정안
	② 가정폭력행위자 수신자료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외에는 열람·조회·제공 또는 공개할 수 없다. 1.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가정폭력범죄 혐의에 대한 수사 또는 재판자료로 사용하는 경우 2.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3호의2에 따른 임시조치 또는 같은 법 제55조의2제1항제1호·제2호 및 제3호의2에 따른 가정폭력행위자의 피해자보호명령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3.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임시조치의 변경·취소의 신청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4.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5조의2 및 제55조의3에 따른 피해자보호명령의 연장의 청구 또는 변경·취소의 신청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5.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범죄 혐의에 대한 수사를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③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가정폭력행위자 수신자료를 열람 또는 조회하는 경우 그 절차에 관하여는 제16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④ 보호관찰소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가정폭력행위자 수신자료를 폐기하여야 한다. 1. 임시조치 또는 피해자보호명령이 효력을 상실한 때

현 행	개정안
	2. <u>임시조치 또는 피해자보호명령의 원인이 되는 가정폭력범죄사건에 대해 법원의 무죄, 면소, 공소기각 판결 또는 공소기각 결정이 확정된 때</u> 3. <u>임시조치 또는 피해자보호명령 집행을 종료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때</u>

□ 현행법 제5장의2(제31조의6부터 제31조의8까지)는 스토킹 행위자에 대한 잠정조치로 전자장치 부착을 결정한 경우의 집행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이는 스토킹 행위자에 대한 잠정조치 중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조치와 전자장치 부착을 병과하여 접근 금지 조치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함임.¹⁶⁾

□ 가정폭력처벌법상 임시조치와 피해자보호명령은 가정폭력행위자에게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피해자 또는 가족구성원이나 그 주거·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등을 내용으로 하고, 피해자보호명령의

16)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잠정조치) ① 법원은 스토킹범죄의 원만한 조사·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스토킹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이하 “잠정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1.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범죄 중단에 관한 서면 경고
 2.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나 그 주거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3.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 3의2.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이하 “전자장치”라 한다)의 부착
 4.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 ② 제1항 각 호의 잠정조치는 병과(併科)할 수 있다.

경우 각 조치를 병과¹⁷⁾¹⁸⁾할 수 있으므로, 두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전자장치 부착을 임시조치와 피해자보호명령으로 함께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임. 따라서 개정안의 의결을 전제로 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법률안(양부남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12410호)」이 의결될 경우 그 집행을 위해서는 개정안과 같이 집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야 할 필요가 있어 보임.

□ 개정안을 입법하는 경우 보완이 필요한 체계·자구 관련 사항은 다음과 같음.

○ 개정안은 현행법 제5장의2와 유사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별도의 장으로 규정하기보다는 제5장의2에 함께 규정하는 것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개정안 제5장의3에 대한 수정의견>

현 행	개정안의 내용을 포함한 수정의견
제5장의2 스토킹 행위자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	제5장의2 스토킹 행위자 및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
제31조의6(전자장치 부착의 집행) ① 법원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3호의2에	제31조의6(전자장치 부착의 집행) ①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3호의2에 따

17)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5조의2(피해자보호명령 등) ② 제1항 각 호의 피해자보호명령은 이를 병과할 수 있다.

18) 임시조치의 경우 현행법과 개정안의 의결을 전제로 함께 발의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12410호)」 모두 각 호의 조치를 병과할 수 있다는 내용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데, 전자장치 부착을 임시조치의 내용으로 도입할 경우 접근금지 조치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 각 조치를 병과할 수 있는 입법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임.

현 행	개정안의 내용을 포함한 수정의견
다른 잠정조치(이하 이 장에서 “잠정조치”라 한다)로 전자장치의 부착을 결정한 경우 그 결정문의 등본을 <u>스토킹행위자의 사건 수사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이하 이 장에서 “관할경찰관서”라 한다)의 장과 스토킹행위자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이하 이 장에서 “보호관찰소”라 한다)의 장에게 지체 없이 송부하여야 한다.</u> ② <u>잠정조치 결정을 받은 스토킹행위자는</u> 법원이 지정한 일시까지 보호관찰소에 출석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상정보 등을 서면으로 신고한 후 보호관찰관의 지시에 따라 전자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 ③ 보호관찰소의 장은 <u>스토킹행위자가 제2항에 따라 전자장치를 부착하면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이를 즉시 통지하여야 하고, 관할경찰관서의 장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2에 따른 스토킹행위자의 잠정조치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피해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u> 1. 성명 2. 주민등록번호 3. 주소 및 실제 거주지 4. 직장 소재지 5. 전화번호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피	<u>른 잠정조치(이하 이 장에서 “잠정조치”라 한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1항제3호의2에 따른 임시조치(이하 이 장에서 “임시조치”라 한다) 또는 같은 법 제55조의2제1항제3호의2에 따른 피해자보호명령(이하 이 장에서 “피해자보호명령”이라 한다)으로----</u> -----<u>스토킹행위자 또는 가정폭력행위자</u>----- -----<u>스토킹행위자 또는 가정폭력행위자</u>----- -----. ② <u>잠정조치 결정을 받은 스토킹행위자, 임시조치 결정 또는 피해자 보호명령을 받은 가정폭력행위자는-----</u> -----. ③ -----<u>스토킹행위자 또는 가정폭력행위자가</u>----- -----<u>「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2에 따른 스토킹행위자의 잠정조치,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3호의2에 따른 가정폭력행위자의 임시조치 또는 같은 법 제55조의2제1항제1호·제2호 및 제3호의2에 따른 가정폭력행위자의 피해자보호명령</u>----- -----. 1. -----

현 행	개정안의 내용을 포함한 수정의견
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보호관찰소의 장은 <u>스토킹행위자가</u>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실을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1. <u>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에 따라 법원이 지정한 일시까지 보호관찰소에 출석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전자장치 부착을 거부하는 경우</u> 2. <u>잠정조치 기간 중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였거나 위반할 우려가 있는 경우</u> 3. <u>잠정조치 기간 중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4항을 위반하였거나 위반하였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u> <신 설> <신 설> <신 설>	2. ----- 3. ----- 4. ----- 5. ----- 6. ----- ④ -----<u>스토킹행위자 또는 가정폭력행위자가</u>-----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4. <u>임시조치 기간 중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위반하였거나 위반할 우려가 있는 경우</u> 5. <u>임시조치 기간 중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13항을 위반하였거나 위반하였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u> 7. <u>피해자보호명령 기간 중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5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위반하였거나 위반할 우려가 있는 경우</u>

현 행	개정안의 내용을 포함한 수정의견
<u><신 설></u> 4. 그 밖에 <u>잠정조치</u>의 이행 및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절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⑤ 관할경찰관서의 장은 제4항에 따른 통지가 있는 경우 즉시 <u>스토킹행위자가</u> 소재한 현장에 출동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사유를 확인하고, 「<u>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u>」 제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유치 신청 등 피해자 보호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관할경찰관서의 장은 「<u>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u>」 제11조제5항에 따라 잠정조치 결정이 효력을 상실하는 때에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이를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⑦ 법원은 <u>잠정조치</u>의 연장·변경·취소 결정을 하는 경우 관할경찰관서의 장과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이를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 따른 전자장치 부착의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조의7(전자장치 부착의 종료) 제31조의6에 따른 전자장치 부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그 집행이 종료된다. 1. <u>잠정조치</u>의 기간이 경과한 때	8. <u>피해자보호명령</u> 기간 중 「<u>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u>」 제55조의2제7항을 위반하였거나 위반하였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8. -----<u>잠정조치, 임시조치 또는 피해자보호명령</u>의----- ----- ----- ⑤ ----- -----<u>스토킹행위자 또는 가정폭력행위자가</u>----- -----<u>「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4호 또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1항제5호에</u>----- -----. ⑥ (현행과 같음) ⑦ -----<u>잠정조치, 임시조치 또는 피해자보호명령</u>의----- ----- -----. ⑧ (현행과 같음) 제31조의7(전자장치 부착의 종료) ----- ----- -----. 1. <u>잠정조치, 임시조치 또는 피해자</u>

현 행	개정안의 내용을 포함한 수정의견
2. <u>잠정조치가</u> 변경 또는 취소된 때 3. <u>잠정조치가</u> 효력을 상실한 때 제31조의8(<u>스토킹행위자</u> 수신자료의 보존·사용·폐기 등) ① 보호관찰소의 장은 제31조의6제2항에 따라 전자장치를 부착한 <u>스토킹행위자의</u> 전자장치로부터 발신되는 전자파를 수신하여 그 자료(이하 “<u>스토킹행위자</u> 수신자료”라 한다)를 보존하여야 한다. ② <u>스토킹행위자</u> 수신자료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외에는 열람·조회·제공 또는 공개할 수 없다. 1. 「<u>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u>」 제2조제2호에 따른 <u>스토킹범죄</u> 혐의에 대한 수사 또는 재판 자료로 사용하는 경우 2. 「<u>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u>」 제9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2에 따른 <u>잠정조치</u>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3. 「<u>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u>」 제11조에 따른 <u>잠정조치</u>의 연장·변경·취소의 청구 또는 그	<u>보호명령의</u>----- 2. <u>잠정조치, 임시조치 또는 피해자 보호명령이</u>----- 3. <u>잠정조치, 임시조치 또는 피해자 보호명령이</u>----- 제31조의8(<u>스토킹행위자 및 가정폭력행위자</u> 수신자료의 보존·사용·폐기 등) ① ----- -----<u>스토킹행위자 또는 가정폭력행위자의</u> ----- ---<u>스토킹행위자 또는 가정폭력행위자</u>----- --. ② <u>스토킹행위자 또는 가정폭력행위자</u>----- ----- 1. 「<u>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u>」 제2조제2호에 따른 <u>스토킹범죄</u> 또는 「<u>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u>」 제2조제3호에 따른 <u>가정폭력범죄</u>----- ----- 2. 「<u>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u>」 제9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2에 따른 <u>잠정조치</u> 또는 「<u>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u>」 제29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3호의2에 따른 <u>임시조치</u> 또는 같은 법 제55조의2제1항제1호·제2호 및 제3호의2에 따른 <u>가정폭력행위자의 피해자보호명령</u>----- ----- 3. (현행과 같음)

현 행	개정안의 내용을 포함한 수정의견
신청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신 설> <신 설> 4.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해당하는 범죄 혐의에 대한 수사를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③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u>스토킹행위자</u> 수신자료를 열람 또는 조회하는 경우 그 절차에 관하여는 제16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④ 보호관찰소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u>스토킹행위자</u> 수신자료를 폐기하여야 한다. 1. <u>잠정조치</u>가 효력을 상실한 때 2. 잠정조치의 원인이 되는 스톱킹범죄사건에 대해 법원의 무죄, 면소, 공소기각 판결 또는 공소기각 결정이 확정된 때 3. <u>잠정조치</u> 집행을 종료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때	4. 「<u>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u>」 제29조에 따른 <u>임시조치</u>의 연장 또는 변경·취소의 신청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5. 「<u>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u>」 제55조의2 및 제55조의3에 따른 <u>피해자보호명령</u>의 연장 청구 또는 변경·취소의 신청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6. 「<u>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u>」 제20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 또는 「<u>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u>」 제63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제2호에----- ----- ③ ----- -----<u>스토킹행위자</u> 또는 <u>가정폭력행위자</u>----- ----- -----. ④ ----- -----<u>스토킹행위자</u> 또는 <u>가정폭력행위자</u>----- -----. 1. <u>잠정조치</u>, <u>임시조치</u> 또는 <u>피해자보호명령</u>이----- 2. <u>잠정조치</u>의 원인이 되는 스톱킹범죄사건, <u>임시조치</u> 또는 <u>피해자보호명령</u>의 원인이 되는 <u>가정폭력범죄사건</u>에----- ----- 3. <u>잠정조치</u>, <u>임시조치</u> 또는 <u>피해자보호명령</u>----- -----

문 의 처
02-6788-5075

참고	가정폭력처벌법상 가정폭력범죄
----	-----------------

구분	형법 조문	내용
상해와 폭행의 죄	제257조	상해, 존속상해
	제258조	중상해, 존속중상해
	제258조의2	특수상해
	제260조	폭행, 존속폭행
	제261조	특수폭행
	제264조	상습범
유기와 학대의 죄	제271조	유기, 존속유기
	제272조	영아유기
	제273조	학대, 존속학대
	제274조	아동혹사
체포와 감금의 죄	제276조	체포, 감금, 존속체포, 존속감금
	제277조	중체포, 중감금, 존속중체포, 존속중감금
	제278조	특수체포, 특수감금
	제279조	상습범
	제280조	미수범
협박의 죄	제283조	협박, 존속협박
	제284조	특수협박
	제285조	상습범 (제283조의 죄에 한하여)
	제286조	미수범
강간과 추행의 죄	제297조	강간
	제297조의2	유사강간

	제298조	강제추행
	제299조	준강간, 준강제추행
	제300조	미수범
	제301조	강간등 상해·치상
	제301조의2	강간등 살인·치사
	제302조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제305조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제305조의2	상습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에 한하여)
명예에 관한 죄	제307조	명예훼손
	제308조	사자의 명예훼손
	제309조	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
	제311조	모욕
주거침입의 죄	제319조	주거침입, 퇴거불응
	제320조	특수주거침입
	제321조	주거·신체 수색
	제322조	미수범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제324조	강요
	제324조의5	미수범
사기와 공갈의 죄	제350조	공갈
	제350조의2	특수공갈

	제352조	미수범
손괴의 죄	제366조	재물손괴등
	제369조	특수손괴
불법촬영죄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같은 법 제15조	미수범
불법정보 유통금지 등 위반죄	정보통신망법 제74조제1항제 3호	정보통신망 이용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 전송

